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6768
----------	-------

제안연월일 : 2026. 2.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법률안 중 14건의 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고,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건명	의안번호	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일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041	박정	'24. 5. 30.	'24. 7. 16.
	2200147	전진숙	'24. 6. 5.	'24. 7. 16.
	2200509	박성준	'24. 6. 14.	'24. 7. 16.
	2200527	용혜인	'24. 6. 17.	'24. 7. 16.
	2200566	한병도	'24. 6. 18.	'24. 8. 20.
	2200710	이수진	'24. 6. 20.	'24. 8. 20.
	2201436	박민규	'24. 7. 5.	'24. 8. 20.
	2202573	황정아	'24. 8. 5.	'24. 11. 14.
	2204028	김태년	'24. 9. 13.	'24. 11. 14.
	2206822	장종태	'24. 12. 23.	'25. 2. 18.

	2208381	남인순	'25. 2. 24.	'25. 8. 18.
	2208749	강선우	'25. 3. 10.	'25. 8. 18.
	2210913	서영교	'25. 6. 17.	'25. 8. 18.
	2212685	이용우	'25. 9. 4.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 직접회부
	2212823	황명선	'25. 9. 9.	
	2213298	정준호	'25. 9. 25.	'25. 11. 12.

나. 이상 1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5. 9. 22.),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 소위원회(2025. 11. 18.) 및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 소위원회(2026. 1. 7.)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6. 1. 7.)는 법안 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위 1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6. 1. 7.) 비용추계 생략의결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상향하면서, 재정 지원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2026년도에 한하여 매월 최대 2만원을 추가 지급함(안 제4조제1항·제6항, 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등).

3. 부대의견

가. 정부는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인구감소 지역을 정할 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모두 포함하도록 한다.

나. 정부는 「아동복지법」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디딤씨앗 통장)의 직접적립방식 전환 검토 등 저소득층 아동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다. 정부는 서울시에도 타 지역 수준의 국고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국고 보조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8세”를 “13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아동에게는 매월 2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⑦ 제6항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수급아동에게 제1항 및 제6항의 아동수당 외에 매월 1만원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8세”를 각각 “13세”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8세”를 “13세”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8세”를 “13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수당의 지급대상 연령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제4조제1항·제6항·제7항, 제5조제1항·제2항 전단, 제7조제5항 및 제10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구분에 따른 연령으로 한다.

1. 2026년: 9세
2. 2027년: 10세
3. 2028년: 11세
4. 2029년: 12세

② 제10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출생한 아동에게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만 나이 도래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매월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제3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 당시 8세 생일이 도과한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제9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된 아동에게는 제10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제4조(추가로 지급하는 아동수당에 관한 특례 및 적용례) ①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2026년 1월 1일부

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②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5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아동에게 그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 그 지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후 8세 생일이 도래하여 이 법 시행일 전에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아동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호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